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여 관광정책의 전문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하고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관광안내소 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관광특구 활성화 및 관광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안 제5조~제6조)
- 다. 관광진흥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라.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안 제8조)

- 마. 민·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바. 잠실관광특구 및 진흥계획(안 제10조~제11조)
- 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안 제12조)
- 아.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의 사용 및 세부기준(안 제13조)
- 자. 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14조~제17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2. (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